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20341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가합514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redacted]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피고 사이에 [redacted] 주식회사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31호로 공탁한 259,176,460원 중 40,314,89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티'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지구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① 솔[redacted]은행(솔[redacted]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② 해[redacted]은행([redacted]은행에서 [redacted]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③ 한[redacted]은행([redacted]은행에서 [redacted]은행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④ 원고(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서 경기[redacted]은행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솔[redacted]은행은 23,111,000,000원, 해솔저축은행은 7,111,000,000원, 한[redacted]은행은 3,556,000,000원, 원고는 6,222,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그 대출금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9. 6. 26.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redacted]티, 수탁자를 [redacted]신탁,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 은행들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
> **[담보신탁용]**
>
> [redacted]티(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redacted]탁(이하 '수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자' 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1)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5. 법률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 우선수익자의 채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특약사항

위탁자 겸 수익자 [redacted](주)(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redacted](주)[2](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하며, 기본계약과 특약사항을 합하여 '본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5조 [세무, 회계 등]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의 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수탁자 단독으로 원천세 상당액을 납부하고 신고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8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⑧ 본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매각 제비용,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
2. 신탁보수
3. 우선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이자, 원금의 순서로 정산한다)
4. 위탁자에 대항력 있는 채권
5. 위탁자의 사업집행 비용 및 수익

제14조 [우선적용]

① 특약사항은 본 신탁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신탁계약 본문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본 신탁계약 본문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본 신탁계약의 본문내용 및 특약사항이 신탁관련법령(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하위법규)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법령 및 동 감독규정에 의한다.

③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제반 약정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며, 위탁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④ 우선수익자는 신탁원본에 대하여 수익자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각종 채권 및 보증채권에 대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상환을 받는 경우 상환금액에 비례하여 우선수익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한다.

나. 그 후 [redacted]티가 위 은행들과의 여신거래약정에 위반하여 신탁부동산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redacted]신탁은 2014.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위 은행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각 파산이 선고되어, 제1심 공동원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redacted]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합계 259,176,460원의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 [redacted]신탁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자, [redacted]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재산세 259,176,460원을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redacted]신탁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31호로 259,176,46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들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과 피고로 정하여 변제공탁하였는바, 위 259,176,460원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의 각 대출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원고의 몫은 위 259,176,460원 중 40,314,899원(= 259,176,460원 × 6,222,000,000원/40,000,000,000원, 원 미만 올림)이다(이하 원고의 몫

1) 판독이 어려워 '…'으로 표기하였다.

2) [redacted]씨(주)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나 수익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redacted]신탁(주)는 [redacted]신탁의 변경 전 상호로 보이므로, [redacted]신탁이 2009. 6. 26. [redacted]티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에 삼[redacted](주)와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특약사항 부분의 당사자를 미처 수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부분에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삼[redacted](주)'로, 수탁자가 '[redacted]신탁(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약사항 부분의 당사자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 부분의 위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redacted]티와 [redacted]신탁은 위 특약사항 역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특약사항이 이 사건 신탁계약 본문(이하 '기본계약'이라고만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기본계약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배제되는바, 특약사항 제8조 제8항 제1호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제1지급순위로 정하고 있는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이 이 사건 재산세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은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된다면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앞서 먼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2) 특히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redacted]티와 수탁자인 [redacted]신탁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를 위한 계약이 아니므로,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이나 기본계약 제15조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귀속권리자가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이나 기본계약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신탁자인 [redacted]티에게 부과된 이 사건 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세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인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것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09. 6. 26.에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였으므로,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인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에 우선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기본계약 제15조에서 이미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러한 대지급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피고이다.

3. 판단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redacted]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가 [redacted]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redacted]신탁에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redacted]티에 부과한 재산세 등으로 조세채권인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탁자인 [redacted]티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인 [redacted]신탁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② 피고는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와 함께 기본계약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redacted]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기본계약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피고로 하여금 [redacted]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3)]

3) 기본계약 제15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신탁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설령 기본계약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③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은 특약사항은 기본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기본계약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특약사항 제8조 제8항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로 신탁보수(같은 항 제2호) 및 우선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같은 항 제3호)에 우선하여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매각 제비용,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같은 항 제1호)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약사항 제8조 제8항 제1호의 내용과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의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약사항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의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재산세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재산세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redacted]신탁은 위탁자인 [redacted]티가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아시아신탁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redacted]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redacted]신탁이 피공탁자를 원고·제1심 공동원고·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가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의 채권보다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탁을 수탁자인 [redacted]신탁이 위탁자인 [redacted]티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아니하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13279 판결 참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재산세를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상욱

판사 박영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목 록

1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장용지 4,200㎡
2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10 임야 1,424㎡
3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11 임야 2,436㎡
4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13 임야 1,608㎡
5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1 임야 4,282㎡
6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14 임야 286㎡
7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공장용지 2,508㎡
8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151㎡
9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176㎡
10.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664㎡
11.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답 61㎡
12.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공장용지 3,134㎡
13.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공장용지 172㎡
14.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509㎡
15.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공장 3,534㎡
16.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13 임야 857㎡
17.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153㎡
18.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153㎡
19.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전 23㎡
20.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463㎡
21.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전 775㎡
22.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대 535㎡
23.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10 임야 855㎡
24. [redacted] 구 [redacted] 동 [redacted] 공장용지 3,168㎡ 끝.